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공동소유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23.(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	자 동 차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소	비 고
1	23가7016	스파크1.0 DOHC	안*현	부산광역시 북구 **	

4. 공고내용

가. 상속권자 및 이해 관계인은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처분할 예정

* 제출방법: 방문(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1층)
팩스(051-888-6924), 메일(jjone30@korea.kr)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은 직권말소 등록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다.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사유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폐차)말소등록 또는 멸실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9.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붙임1】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이행각서

이행각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행각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 상속이전등록 미이행 사유(상속 분쟁 등) 기입 후, 이전등록 이행 기한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